

# 학부모의 권리장전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모로서, 귀하는 다음에 대한 권리를 갖습니다.

1. 개인별 교육 프로그램(IEP) 미팅에 참석하고 자녀의 이익을 대변할 권리.
2. IEP 미팅에 변호사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킬 권리.
3. 자녀의 평가서 사본을 받고, 이에 동의하지 않으며, 공공비용으로 독립 교육 평가(IEE)를 요청할 권리.
4. 평가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외부 소스의 서면 보고서를 제공할 권리.
5. 귀 자녀에 관한 모든 교육 기록을 조사하고 IEP의 사본을 제공받을 권리.
6. IEP 팀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분쟁 해결 절차를 추구할 권리, 여기에는 교섭이 원활한 IEP 미팅 요청, 초등 및 중등교육부에 자녀의 불만사항 제출, 주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중재 요청, 공정하고 정당한 법적 절차의 청문회 개최, 법원에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른 결정 청원 등이 포함됩니다.
7. IEP의 검토와 IEP의 어떠한 관점을 변경시키는 결정에 참여할 권리, 그리고 자녀의 교육 배치의 변경이나 무료 및 적합한 공공 교육의 제공에 대한 사전 서면 통지를 받을 권리.
8. 자녀를 최대한 적합한 정도로 가장 덜 제한적인 환경 및 일반 교육 학급에 배치할 권리.
9. 귀하가 영어 능력에 제한이 있는 경우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하는 편의 제공을 요청할 권리.
10. 자녀의 고유한 필요를 충족시키도록 고안된 IEP와 함께 적합한 무료 공공교육을 자녀가 받을 권리. 여기에는 특수 교육 및 보조 기술 기기 및 서비스, 차량, 언어 병리학 서비스, 청각 서비스, 해석 서비스, 행동 개입 등의 심리 서비스, 물리치료, 작업요법, 치료 레크리에이션 등의 레크리에이션, 재활 카운셀링 등의 카운셀링 서비스, 방향성과 이동 서비스, 학교 보건 서비스, 학교 간호사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 학부모 상담 및 교육, 진단 또는 평가 목적의 의료 서비스와 같은 관련 서비스가 제한없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1. 연방 장애인 교육법(IDEA) 또는 연방재활법 1973의 제 504조에 의거 모든 미팅을 녹음할 권리.

이 문서는 연방 또는 주법에서 부여된 권리 이상의 권리 또는 권리들을 부여하지 않으며 정보 제공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초등 및 중등 교육부, 특수교육국(573-751-0699 또는 [webrephyspeco@dese.mo.us](mailto:webrephyspeco@dese.mo.us))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2010년 1월 1일, 수정본, 2021년 12월 29일